

소음도 검사기관의 준수 사항(제63조 관련)

1. 소음도 검사는 직접검사를 원칙으로 하며, 기술직 1명 이상을 참여시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 소음도 검사신청자가 현장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검사장 및 시설·장비 등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현장검사를 할 수 있다.
2. 소음도 검사기계·장비는 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를 받은 기계·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.
3. 제58조에 따른 소음도 검사방법에 따라 소음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4.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 - 가. 소음도 검사 신청 서류
 - 나. 소음도 검사기록부
 - 다. 소음도 검사 관련 서류